영국 - 혼성불일치제도 수정안 초안 발표

■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혼성불일치제도를 일부 수정한 법안 초안과 공청회 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함[1)]**

○ 영국 과세관청은 기존의 혼성불일치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불공평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조항을 소급 적용하고, 일부 수정조항은 2021년도 예산안(Finance Act 2021)의 발효일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 기존의 영국 혼성불일치 법안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음

■ **이중공제(double deduction)와 관련하여 '산입/공제불가소득(inclusion/no deduction inco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 제3자의 부채와 관련하여 '함께 행동 규칙(acting together rule)'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2017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함**

○ 이중공제와 관련하여 '산입/공제불가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중과세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제2591D조의 소득경감 혜택을 폐지함

- 실무상 일부 미국 그룹은 영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불인정 자회사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의 비용은 미국에서 공제되는 액수만큼 이중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이중공제액은 이중산입소득 또는 제2591D조 소득(특수관계자 이외의 제3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의해서만 공제 가능하였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지분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 '함께 행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1)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mendments-to-the-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for-corporation-tax/amendments-to-the-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for-corporation-tax, 검색일자: 2020. 12. 17.; EY, "UK proposes to amend hybrid and other mismatches regime - implications for US multinationals," November 17,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uk-proposes-to-amend-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implications-for-us-multinationals-, 검색일자: 2020. 12. 17.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지분 비율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함께 행동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 제3자의 부채를 특수관계인의 부채 또는 지배 그룹 내의 부채로 봄
- 기존에는 제3자인 채권자가 지분권자와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권자의 모든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혼성불일치제도가 적용되어 채권자의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음

■ **이중공제와 관련하여 이중산입소득(dual inclusion income)의 그룹 내 배분을 도입하고 면세 투자자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예산안 발효 시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기존의 혼성불일치제도는 이중산입소득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이중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를 수정하여 영국 그룹 내의 기업이 관련 신청을 한 경우 그룹 내에서 이중산입소득과 이중공제 액수가 일치하는 한도까지만 그에 따른 대응 규정이 적용됨

○ 혼성체의 투자자가 특정 유형의 면세단체(연금기금, 국부펀드, 자선단체 등)인 경우에 면세단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공제/불산입(deduction non-inclusion)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을 혼성체로 간주하지 않음

-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면세단체의 세부 목록이 있음
- 개정사항은 EU 조세회피방지침(ATAD 2)과 BEPS Action 2 보고서에 따른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